

# 예 산 총 칙

2021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412,826,883	42,384,806
일반회계	1,249,019,585	37,470,588
특별회계	163,807,298	4,914,219
공기업특별회계	140,341,942	4,210,258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68,841,120	2,065,234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71,500,822	2,145,025
기타특별회계	23,465,356	703,96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843,695	175,311
수질개선특별회계	1,194,070	35,822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941,000	28,23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4,805	144
주택사업특별회계	2,895,982	86,879
농공단지특별회계	351,000	10,530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0,460	314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662,549	79,87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694,700	50,841
도시개발특별회계	1,711,150	51,335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6,155,945	184,678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2021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68,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87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